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추가함
(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